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01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2.

박 왕 규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 박왕규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4003
----------	----------

발의연월일: 2024. 2. 2.

발 의 자: 박왕규, 김정희, 서민우,
이영빈, 이진환

1. 제정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안 제5조)
- 다.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구청장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구청장은 제공받은 데이터 및 달서구가 생성·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

바.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나. 비용추계서 : 필요시 예산 조치

대구광역시달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